

전주지방법원 2023. 9. 21 선고 2022나1096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1. A

2. B

3. C

4. D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규

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추길환

피고, 항소인 F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사무엘

변 론 종 결 2023. 7. 20.

판 결 선 고 2023. 9. 21.

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. 9. 28. 선고 2021가단2580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다항 중 “각 1,065,303원의”를 “각 연 1,065,303원의”로 경정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피고는, 원고들에게 군산시 G 전 172㎡ 중 별지 도면 표시 9, 10, 11, 12, 13, 14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7.2㎡ 지상 판넬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, E과 공동하여, 위 토지 97.2㎡를 인도하고, 원고 A에게 7,526,499원, 원고 B, C, D에게 각 6,345,87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2022. 4. 6.부터 위 토지 97.2㎡의 인도완료일까지 원고 A에게 연 1,263,499원의, 원고 B, C, D에게 각 연 1,065,303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[항소취지]

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 및 쌍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쳐 쓰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“피고 F는”부터 제11행의 “소유하고 있는 사실을”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“피고는 2015. 4. 6.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, 10, 11, 12, 13, 14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7.2㎡(이하 ‘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’이라 한다)에 판넬 조립식 건물(이하 ‘이 사건 조립식 건물’이라 한다)을 건축하여 소유하면서,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

사실을”

○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의 2)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.

“2) 이에 대하여 피고는, 피고와 E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J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하여 사용·수익하고 있었고, 원고들도 이와 같은 사용 현황을 모두 확인하고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,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, 이 사건 조립식 건물에 대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조립식 건물에 대한 2007. 10. 4.자 임대차계약서(을 제1호증)가 있는데,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J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14/119 지분을 소유한 소수지분권자에 불과하였으므로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·수익할 권원이 없었던 점(나아가 J가 다른 지분권자들과 협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), ②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E이므로,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, ③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사용·수익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권원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임대차계약서(을 제1호증)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, 나아가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전제로 한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”

○ 제1심판결 제5쪽 제21행의 “각 1,065,303원의”를 “각 연 1,065,303원의”로 고쳐 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,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다항 중 “각 1,065,303원의”는 “각 연 1,065,303원의”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재규, 판사 구나영, 판사 정유성

